##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40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 윤준병ㆍ허성무ㆍ장종태

이광희 • 문대림 • 박지원

최민희 • 이워택 • 정동영

양부남 · 문금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을 통하 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 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

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함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 즉,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민주적인 절차 에 따른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 설).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공판절차(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
	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
	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
	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공판절차(이미 공소의 제기
	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
	하여야 한다.